



## 영업활동 관련정보 부정취득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해당여부에 관한 항소심 사건

22

### 01 서지 사항

국가   법원	일본 도쿄고등법원	사건번호	평정15년(네) 제1791호
판결 일자	2003. 9. 29.	판결 결과	원고 패소
원고 (항소인)	와코 상사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1. A, 2. 주식회사 라딕스, 3. 유한회사 미라이 코퍼레이션, 4. 유한회사 야마다 패키지		
참조 법령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4항, 제2조 1항 14호		
영업 비밀	영업활동 정보		
키워드 (Keyword)	영업비밀, 부정취득,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부정경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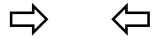
### 02 사건 개요

원고는 식육 포장용 자재의 수입과 도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A는 기존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라딕스 주식회사(이하 '라딕스')는 A가 원고회사를 퇴사하고 설립한 회사이며, 미라이 코퍼레이션(이하 '미라이') 및 야마다 패키지(이하 '야마다')는 항소인과 동종업계의 회사이다.

원고는 A가 재직 중에 영업활동 관련정보를 부정취득하여, 다른 피고인 라딕스, 미라이, 야마다가 이것을 활용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제1청구) 또한 피고는 원고의 육류 포장용 네트에 곰팡이가 생기기 쉽다는 영업상의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부정 경쟁을 하였다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제2청구) 원심은 원고의 주장인 제1청구를 기각하였고, 제2청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일부 인용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 03 주요 쟁점

원 고 (항소인)



피 고 (피항소인)

원고의 회사는 직원수가 소규모인 회사로서 영업담당자 아닌 직원이라도 모두가 해당 정보를 비밀로서 인식하고 있으며, 접근도 제한되어 있는 영업비밀이다.

회사의 규모나 직원의 수는 비밀관리성과 무관하다.

A로부터 절취된 정보가 현재 피고들의 영업에 이용되고 있음이 명백하며, A가 구입한 데이터 저장매체가 호환성이 없는 것을 구입한 것은 각 정보를 절취하기 위해서이다.

해당 데이터 저장매체는 필기문서를 스캐너로 읽어 이미지로 저장하는 것이므로, 원래 다른 OA기기와 호환성이 없는 매체이다.

원고가 피고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육류용 넷트 전체에 대한 위생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자 함이며, 비방이나 피해를 의도한 부정경쟁이 아니다.

일정한 조건하에서 곰팡이가 생길 수 있음을 밝히는 실험이라면 자사 제품을 이용하면 그만이나, 고의적으로 라디스의 상품을 명시하고 실험을 진행하여 허위 사실을 통한 부정경쟁이 성립한다.

### 04 판결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 2조 4항의 비밀 관리성이 긍정되어야 한다. 이는 해당 정보에 영업비밀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해당 정보에 접근하는 자가 제한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의 정보는, 정보의 중요성이나 취업 규칙 등을 고려한다고 해도 보관자 이외의 자에게 영업비밀임을 인식하는 조치가 없으며, 이러한 정보에 접촉할 수 있는 자가 제한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해당 정보에 대하여 비밀관리성을 부정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취득과 관련하여, 해당 매체는 원고가 사용하던 기계 사이에 호환성이 없는 것은 구입 전부터 분명한 것이며, A가 이것을 구입한 목적이 절취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나 이는 주관적인 의심의 범위에 있다. 또한 비밀관리성이 부정되는 만큼 이에 따른 부정취득도 인정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부정경쟁에 관하여, 원고는 육류용 넷트 전체에 관한 위생 관리의 중요성에 대하여 논하고 싶었다고 하나, 이를 뒷받침할 정확한 증거가 없다. 또한 본건의 사진이

---

피고의 회사 제품이 명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촬영한 것이며, 이는 해당 제품이 곰팡이가 쉽게 생긴다는 인상을 안겨주는 것이라 인정될만한 여지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항 14호 소정의 부정경쟁에 관한 책임이 있다.

---

## 05 Key Point

---

영업비밀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업비밀임을 명시하고 관리하여야 해당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

소비자로 하여금 의도의 여부와 상관없이 타 제품의 결함이나 문제점을 명시하는 것은 부정경쟁에 해당한다.

---